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구합6691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
원 고	주식회사 A
피 고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9. 12. 19.
판 결 선 고	2020. 2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8. 11. 29.[1]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,307,20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1)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인 '2018. 12. 4.'은 '2018. 11. 29.'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가. 원고는 2014. 6. 18. 국가 소유인 [redacted]구 B 대 751.43㎡[2], C 대 24.8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를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관리기관인 [redacted]공사를 통해 매수하고, 2014. 7. 31.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. 원고는 2014. 7. 31.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,563,000,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142,520,000원, 지방교육세 14,252,000원, 농어촌특별세 7,126,000원 합계 163,898,000원을 각 신고·납부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8. 10. 12. 피고에게,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공매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·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63,898,000원에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51,307,2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경정청구'라 한다).

다. 피고는 2018. 11. 29.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매매거래를 통한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. 2. 26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9. 4. 11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에 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되고,

2) [redacted]구 B 대 972.2㎡ 중 국 지분 3206분의 2478에 해당하는 면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지방세법이 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6조 제1호에 원시취득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위 개정으로 그에 관한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다. 원고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지방세법(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. 위 구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강학상의 개념에 의해 해석해야 하는데, 원고가 공매(경매)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하는 취득으로서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'관계 법령'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'공매(경매)'로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'공매(경매)'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. 7. 31. 이 사건 부동산을 '매매'로 취득하였고(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 소유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매매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), '매매'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[별지]

관계 법령

▣ 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조(정의)

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

▣ 지방세법

제6조(정의)

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(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

제10조(과세표준)

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연부(年賦)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(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,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제11조(부동산 취득의 세율)

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3. 원시취득: 1천분의 28

7.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

가. 농지: 1천분의 30

나. 농지 외의 것: 1천분의 40 끝.